

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35
----------	------

2007. 8. 1
총무위원회

I. 심사 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. 6. 5 광양시장(이성웅)

나. 회부일자 : 2007. 7. 23 회부

다. 상정일자

-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(2007년 7월 31일) 상정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시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관련 업무를 위임의 근거규정이 개정(건축법시행령의 해당규정 삭제)되어 사무 위임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개정(삭제)하고,

- 현실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를 일제정비 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제2조중 “의회사무과장”을 “의회사무국장”으로 개정

- 별표2.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 개정 : 주택분야란 삭제

분야별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 법률	수임기관
주 택	1.건축신고	『건축법』 제9조 및 제71조,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17조	읍면장
	2.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	『건축법』 제15조 및 제71조, 동법시행령 제117조	읍면장
	3.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	『건축법』 제72조, 동법시행령 제117조	읍면장

3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- 건축법 제9조, 15조, 72조
-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

4. 검토의견(전문위원)

- 기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 되었던 주택·건축관련 업무가 2003. 2. 24일 건축법시행령 제 117조(권한위임)가 일부 개정되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, 광양시 사무위임조례중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 관련법인 건축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.
- 다만, 읍면의 주택·건축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 될 경우 읍면지역 주민불편이 예측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대책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) 이돈구·박노신·강정일 의원
 - 상위법인 건축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이지만 조례 개정을 안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?
 -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4년동안 개정 안한 이유?
 - 읍·면 지역 시민 불편 해소책 마련
- 답변) 총무과장(황선범)
 - 관련 조례를 미개정시 행정기관에서 권한 없는 행정 행위를 하는 꼴 임
 - 읍·면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주택과와 대책 강구

6. 의견조율 내용(토론 요지)

- 읍면지역의 건축업무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실에 건축업무 신고 상담자 배치 등 사전 충분한 대책 마련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6명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